
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
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조)

당초 : 수급자 → 변경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수급자”를 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”로, “의사상자가족으로 한다”를 “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구미시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단,”을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원중단)”을 “(지원금 감액, 중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조정”을 “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신청한 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저소득주민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자</u> 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「의사상자 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의사상자가족</u> 으로 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사자유족과 의사상자 및 의상자 가족</u> 을 말한다.
2. (생 략) 제3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<u>구미시</u>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·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. 단,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.	2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. <u>다만</u> , ----- -----.
제7조(지원중단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<u>조정</u> 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금 감액, 중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</u> --.
제9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 시행에	제9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</u> 의 -----
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 --.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관계법령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배 정 미
	담 당	신 형 수
	담 당 자	곽 건 우 (480-5132)